

정 관

학교법인 서림학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서림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운영한다.

1. 장안전문대학(교명은 “장안대학교”, 이하 “대학교”라 한다.)
2. 장안전문대학 부설유치원(명칭은 “장안대학교 부설유치원”, 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번지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의1(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삭제)

제13조 내지 제17조(삭제, 2008년 4월 14일)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 한다.)
2. 감사 2인(추천 감사 1인을 포함 한다.)

제18조의1(상근임원) ①제18조의 임원 중 다음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장
 2.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 1명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이사장 및 개방이사를 포함 한다.)
 2. 감사 2년(추천감사를 포함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에 의한 이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이 법인의 중요 추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6.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7. 당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 등의 추천 및 선임 방법)①이 법인은 개방이사 또는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감사는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개방이사의 추천이 없을 경우 이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경우 이 법인 및 대학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추천위원회는 장안대학교 평의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제2항 제2호의 추천위원은 이 법인 및 대학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

④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4분의 1로 한다.

④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을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⑤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⑦이 법인의 건학 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 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의1(행정감사) ①제25조에서 정하는 감사이외에 학교법인 이사장은 별도로 대학 및 유치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로 구분한다.

③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1년 내지 3년의 범위 안에서 감사주기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④부분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특정업무분야 및 교·직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피감사기관은 감사의 업무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행정감사반의 편성) ①제25조의1에 의한 행정감사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행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요원(이하 “감사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감사요원은 법인사무조직 및 대학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사무조직 및 대학 이외의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당해 기관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요원으로 차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3(행정감사요원의 권한) 행정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서류·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답변요구
3. 금고·장부·물품 등의 봉인
4. 계약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권한

제25조의4(행정감사결과의 처리) ①감사요원은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감사요원으로부터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5(행정감사의 위임규정 등) 행정감사 수행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삭제 2006.6.29.)

제2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명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의2(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학생 및 유치원 원아정원의 증감, 대학 학부·학과의 신설과 폐지 등)
2. 법인, 대학교 및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인, 대학교 및 유치원의 발전계획(특성화 포함)에 관한 사항
4. 대학교 및 유치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인사, 복무, 직제, 급여, 퇴직금 지급 등)
5. 대학교 및 유치원의 시설, 설비에 관한 사항(건물의 신·개축, 증축 등)
6. 삭제 <개정 2021. 7. 3.>
7. 기타 대학교 및 유치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의결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

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정 2021. 7. 3.>
 제2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1. 3.>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 학 평 의 원 회

제31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등) ①평의원회 평의원은 당해 대학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되,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수가 전체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1. 31.>

②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평의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 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기타 이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4(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원 5인 : 전임교원 이상

2. 직원 3인 : 직원 대표<개정 2024. 1. 31.>

3. 조교 1인 : 조교 대표<개정 2024. 1. 31.>

4. 학생 1인 : 재학생 중 대표<개정 2024. 1. 31.>

5. 기타 1인 이내 :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인사<개정 2024. 1. 31.>

제31조의5(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6(소집) ①평의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한다.

②평의원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대학의 장 또는 재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31조의7(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31조의8(이사장의 개선요구) 이사장은 평의원회의 운영이 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사 학 윤 리 위 원 회

제31조의9(사학윤리강령준수) ①이 법인은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있어 별첨3의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②이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4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림·축산·개발업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
2. 부동산 매매업·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
3. 부동산 건설업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
4. 물품 제조업·판매업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
5.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6. 기타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제33조(수입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림학원 사업소를 경영한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서림학원 사업소는 학교법인 서림학원의 소재지로 한다.

제35조(관리인) ①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면

제39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강사, 명예교수, 겸임 교원, 초빙교원 등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1.31.>

- ③대학교의 부총장, 처장, 부처장, 기타 교무위원, 학술정보관장 및 부속시설 등의 장, 학부장, 학과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21. 7. 3.>
- ④유치원의 원감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⑤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삭제 2006.6.29.)

- 제39조의3 (정년보장 교원의 심사) ①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 보장 교원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 ③위원회 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④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4(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 가. 교수 : 정관 제46조의3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장안대학교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

및 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하되, 2회에 한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제39조의5(신규채용) ①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에 대학의 장은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의6(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①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어(종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경우의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교수 : 정관 제46조의3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2025. 2. 18.) <개정 2025. 4. 29.>

2. 부교수 : 4년 (2025. 2. 18.)

3. 조교수 : 2년 (2025. 2. 18.)

②이사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③이사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 종료일 2월전까지 해당 대학 교원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대학의 장은 업적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업

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1. 7. 3.>

제39조의7(특별채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
(외국인 등 제외)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 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인 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삭제> (2016.12.19.)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25. 4. 29.>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전공전환 교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게 된 때<신설 2025. 4. 29.>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로 한다.

2. 제4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다.

3.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제40조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
개월로 한다.<개정 2025. 4. 29.>

7. 제4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전공전환 교육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4. 29.>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
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0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
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0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
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0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직위해제 및 면직)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정 2022. 4. 12.>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직위해제대상 비위행위)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제정 2022. 4.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2.>

④삭제 (2022. 4. 12)

⑤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2.>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⑨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보수 월액의 8할

2. 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보수 월액의 5할.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

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보수 월액의 3할을 지급한다. <제정 2022. 4. 12.>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6조의3(정년) ①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③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정년은 따로 정한다.

제46조의4(명예퇴직수당)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원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삭제(2008.4.14.)

3.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4.삭제(2021.7.3.)

②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명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39조의4의제1항제4호를, 정관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6의제4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9조(인사위원회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3.>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설치) ①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2. 4. 12.>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5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개정 2022. 4. 12.>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개정 2022. 4. 12.>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정 2022. 4. 12.>

④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유치원을 제외한다.)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제55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1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6조(교원 징계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양성평등기본법」 제3호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2.>

제58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선)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4. 12.>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4. 12.>

제60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4. 12.>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4. 12.>

④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정 2022. 4. 12.>

제60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①임용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는 재심의를 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

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제2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정 2022. 4. 12.>

제60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교원징계위원회는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징계대상자, 징계 의결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이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정 2022. 4. 12.>

제61조(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1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직원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63조(준용규정 및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재 심 위 원 회

제64조 내지 제77조(삭제)

제4절 사 무 직 원

제78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9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소속 일반직원

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0조(직원의 인사교류) ①학교법인은 법인과 대학교, 유치원의 균형발전과 상호보완을 위하여 법인사무조직과 대학교, 유치원의 일반직원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기관 상호간 전직, 전보 및 파견 근무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81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지급 및 근무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의2(명예퇴직수당) 일반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4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하되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비정규직 직원은 계약기간에 의한다.

제85조(징계)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교원징계위원회와 별도로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삭제 2014.11.21.)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 제86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고, 법인의 감사 산하에 감사실을 둔다.<개정 2021. 7. 3.>
- ②법인사무처에는 통무과(팀)와 사업과(팀) 등을 두며 처장은 전임교원으로 겸직하고, 과장 또는 팀장은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감사실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사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 학 교

- 제87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총장의 궐위 시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8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는 교무처, 기획처, 학생지원처, 입학처, 산학협력처, 총무처 등을 둔다. <개정 2021. 7. 3.>
- ②각 처에는 분장 업무별로 과 또는 팀을 둔다.
- ③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하며 과장 또는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 ④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외부 인사를 부서장 등으로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할 수 있다.
-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89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이하 “부속시설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학술정보관, 정보전산원, 교육방송국, 학보사,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예비군대대, 기타 필요한 부속기관). <개정 2025. 2. 18.>
 2. 부설기관(평생교육원, 국제교류원, 기타 필요한 부설기관). <개정 2025. 2. 18.>
- ②부속시설 등에는 각각 장을 두며 그 장은 일반직원,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로 보하되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부속시설 등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부속시설 등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전임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학술정보관) ①학술정보관에 수서과(팀), 열람과(팀)를 두며 수서과장 또는 팀장은 일반직원 또는 전임교원으로 보하고, 열람과장 또는 팀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원 또는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③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④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유 치 원

제92조(원장 등) ①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 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절 정 원

제93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8장 보 칙

제94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인터넷 또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9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6조(합병당초의 임원)이 법인의 합병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합병 당초의 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김양형	1929. 7.10	4년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103-1
이 사	이한길	1934.11.10	4년	양주군 동두천읍 생면리 557
이 사	이원희	1934. 4. 9	4년	서울시 서대문구 갈현동 6-60
이 사	육중호	1934.11.10	4년	서울시 관악구 흑석동 186-59
이 사	이원용	1927. 3.15	4년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695-7
이 사	박용주	1928. 5.14	4년	서울시 관악구 동작동 307
이 사	박준권	1924. 9. 2	4년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47-5
이 사	정덕균	1928. 9. 4	4년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165-60
이 사	오필현	1924. 2. 3	2년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59-21

제97조(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정 2022. 4. 12.>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3. (교원징계에 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

여 임명된 현재 재직 중인 총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199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학교법인 명칭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서림학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199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제3절 재심위원회 제64조에서 제77조까지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제32조 제5항,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1항, 제85조 제4항, 제86조 제1항 및 제2항, 제88조 제1항, 별표2(일반직원 정원)의 변경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장안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은 이 정관에 의하여“장안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관 제31조2의

규정에 의한 대학평의회 설치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2007년 7월 27일(사립학교법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궐위 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0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현재 재직 중인 총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강사임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임용행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강사에 대하여는 이 정관에 따라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
3. (징계사유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21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구 분	인 원
총 계	18
일반직계	9
2급(참여)	1
3급(부참여)	1
4급(참사)	2
6급(주사)	2
9급(부서기)	3
기능직계	9
6등급계	4
운전원	1
목공장	1
전기장	1
건축장	1
7등급계	3
운전원	1
건축장	1
토목원	1
10등급계	2
위생원	2

(별표2) <개정 2020. 6. 30.>

학교 일반직원 정원

구 분	인 원	비 고
총 계	59	
일반직(계)	41	
3급	1	
4급	3	
5급	8	
6급	7	
7급	5	
8급	7	
9급	10	
기술직(계)	16	
4급	1	
5급	3	
6급	3	
7급	5	
8급	2	
9급	2	
기능직(계)	<폐기 2020. 6. 30.>	
별정직(계)	2	

(별첨3)

私學倫理綱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私學은 나라와 겨레의 發展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傳統을 이어 받은 우리 私學은 지금, 새 세기의 文明史的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知識基盤 社會를 선도할 創意的이고 道德的으로 成熟된 人材를 養成할 歷史的 責務를 附與받고 있다.

이에 우리 私學經營者 일동은 教育立國의 使命感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私學의 公共性和 自律性を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私學倫理綱領을 採擇한다.

우리는 良心과 矜持를 가지고 이 綱領을 遵守하며, 이에 違背되는 경우에는 勸勉과 制裁로 이를 自律的으로 是正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 建學精神 : 우리는 私學의 뿌리가 崇高한 建學精神에 있음을 銘心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繼承하고 實現하는 일에 獻身한다.
- 公共性 : 우리는 私學經營에 있어서 學園內外的 個人이나 集團의 사사로운 利害關係를 초월하여 公共性的 原則을 尊重함으로써 教育福祉理念을 具現하는데 最善을 다한다.
- 自主性 : 우리는 教育의 自主性和 專門性, 政治的 中立性を 保障한 憲法精神에 立脚하여, 私學의 本質을 侵害하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도 斷乎하게 排擊하며, 自律的으로 教育方針을 實踐하여 私學의 特殊性을 昂揚한다.
- 經營合理化 : 우리는 私學經營을 合理化·效率化하고, 모든 教育資源을 公正하고 透明하게 管理·保護함으로써, 教育效果를 極大化하는 일에 우선적인 努力을 傾注한다.
- 和合·協力 : 우리는 私學 構成員 모두가 自發的으로 參與하고 獻身할 수 있도록, 和合·協力하는 教育環境을 助成하며, 모든 構成員의 正當한 權益이 尊重되도록 努力한다.